[붙임]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개정 신-구 대조

개정사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5조 • 제39조 •	제41조,	아동복지법	제38조
개정사항	반영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개정내용 (2024. 8. 22. 개정)

1. 자기소개서 활용 허용

기존	개정		
(2026학년도 33쪽)	(2026학년도 33쪽)		
(없음)	 4. 기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입학 전형자료로 교과성적 외의 자료(예: 특기 실적 등)를 활용할 수 있음(자기소개서 제외) ● 단, 재외국민과 외국인 선발 대상자 중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전 교육과정 이수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30세 이상인 사람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2. 전형기간 자율화 반영

기존	개정	
(2026학년도 29쪽)	(2026학년도 29쪽)	
 7)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 자격기준 ○ 동일 학년도를 기준으로 3월 입학학기에 합격한 자는 9월 학기 입학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제7호 전 교육과정 이수자 해당) 	7)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 자격기준 ○ (삭제)	

기존	개정					
(2026학년도 38쪽)	(2026학년도 38쪽)					
	라. 전형기간 자율화					
	■ 모집시기 구분(「고등교육법 시행령」제41조)					
(없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 으로 선발할 때에는 모집 구분과 해당 선발 일정을 따로 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제2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사람 2.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의 사람(교육대학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은 포함하되, 전문 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려는 경우: 30세 이상인 사람 나. 전문대학에 입학하려는 경우: 2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					
	○ 재외국민과 외국인 선발 대상자 중 북한 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전 교육과정 이수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30세 이상인 사람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은 모집시기의 구분 없이 모집 일정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선발함					
	ᡱ 모집일정					
	구 분 기 간					
	원서접수, 전형기간, 합격자 2025. 07. 07.(월) ~ 2026. 02. 28.(토)					
	발표, 등록 9월 입학 2026. 03. 01.(일) ~ 08. 31.(월)					
	 ※ 원서접수, 전형기간, 합격자 발표, 등록 및 충원과 관련한 세부 일정을 위 기간 내에 대학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여러 차수로 전형을 실시할 경우 원서접수를 차수 간에 중복하여 실시할 수 없음 ※ 모집요강은 대학이 정하는 모집기간 이전에 발표함 					

기존 개정

(2026학년도 40~41쪽)

3.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세부사항

- 가. 모집시기 구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
 - 모집시기는 수시모집·정시모집·추가 모집으로 구분하고, 모집 간의 분할 모집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함

나. 대학입학지원방법(「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點 공통사항

○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시 모집,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음

.

(2026학년도 40~41쪽)

- 3.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세부사항 가. 모집시기 구분(「고등교육법 시행령
 - 가. 모집시기 구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
 - 모집시기는 수시모집·정시모집·추가 모집으로 구분하고, 모집 간의 분할 모집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함
 - 단, 재외국민과 외국인 선발 대상자 중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전 교육과정 이수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30세 이상인 사람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에서는 모집시기의 구분 없이 선발 일정을 자율적으로 정함
 - 나. 대학입학지원방법(「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點 공통사항

O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시 모집,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 등 대학이 실시하는 전형에 지원할 수 있음

.

○ 재외국민과 외국인 선발 대상자 중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전 교육과정 이수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30세 이상인 사람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은 모집시기를 구분 하지 않음에 따라 수시모집 지원횟수 제한, 정시모집 군별 지원횟수 제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기존 개정

≇ 수시모집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시모집'에 해당하는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하고, 지원 가능한 횟수는 최대 6회로 제한함
 - '6회 제한'에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을 포함하여 수시모집에서 시행하는 모든 전형이 해당됨(9월 입학전형 포함)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속한 모든 전형(「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29조제2항제2호 재외국민 및 외국인 (2% 이내), 제6호 북한이탈주민, 제7호 전 교육과정 이수자)이 수시모집 지원횟수의 계수 대상임. 단,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2 수시모집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시모집'에 해당하는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하고, 지원 가능한 횟수는 최대 6회로 제한함
 - '6회 제한'에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제2호)을 포함하여 수시모집에서 시행하는 모든 전형이 해당됨
 - (삭제)

(2026학년도 42~43쪽)

다. 복수지원 관련 사항

- **!!!** 복수지원 금지사항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음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 정원 외 전형도 포함함. 단, 부모가 모두 외국 인인 외국인 전형은 지원횟수 제한 없음

(2026학년도 42~43쪽)

다. 복수지원 관련 사항

- **볼** 복수지원 금지사항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음
 - (삭제)
- 재외국민과 외국인 선발 대상자 중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전 교육과정 이수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30세 이상인 사람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은 모집 시기를 구분하지 않음에 따라 모집 시기 간 복수지원 금지사항을 적용 하지 않음

3. 자립지원 대상자 특별전형 지원자격

기존	개정		
(2026학년도 21쪽)	(2026학년도 21쪽)		
아) 자립지원 대상자 특별전형	아) 자립지원 대상자 특별전형 지역기준 법령상 지원자격 「아동복지법」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